

##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개정 99.01.06. 규칙 제 3호	개정 08.10.07. 규칙 제 79호	개정 14.02.20. 규칙 제151호
개정 99.05.11. 규칙 제 6호	개정 08.12.17. 규칙 제 81호	개정 14.12.11. 규칙 제159호
개정 00.01.27. 규칙 제 9호	개정 09.06.04. 규칙 제 88호	개정 15.07.02. 규칙 제166호
개정 00.07.26. 규칙 제12호	개정 09.11.16. 규칙 제 93호	개정 15.09.14. 규칙 제171호
개정 00.12.01. 규칙 제15호	개정 09.12.17. 규칙 제 95호	개정 15.10.19. 규칙 제174호
개정 01.02.01. 규칙 제16호	개정 10.02.26. 규칙 제 99호	개정 16.10.18. 규칙 제186호
개정 01.06.13. 규칙 제20호	개정 10.10.20. 규칙 제103호	개정 16.11.30. 규칙 제188호
개정 01.08.29. 규칙 제22호	개정 10.12.08. 규칙 제105호	개정 17.01.25. 규칙 제189호
개정 02.04.12. 규칙 제27호	개정 11.10.19. 규칙 제112호	개정 17.05.16. 규칙 제192호
개정 03.02.27. 규칙 제30호	개정 11.12.01. 규칙 제115호	개정 18.09.20. 규칙 제207호
개정 03.09.01. 규칙 제36호	개정 12.02.27. 규칙 제124호	개정 19.05.17. 규칙 제216호
개정 04.01.17. 규칙 제39호	개정 12.05.18. 규칙 제126호	개정 19.08.01. 규칙 제220호
개정 05.01.31. 규칙 제50호	개정 12.12.21. 규칙 제135호	개정 20.05.19. 학칙 제226호
개정 06.02.14. 규칙 제58호	개정 13.02.26. 규칙 제137호	개정 20.08.26. 학칙 제233호
개정 07.02.28. 규칙 제65호	개정 13.05.27. 규칙 제142호	개정 20.12.24. 학칙 제236호
개정 07.11.21. 규칙 제70호	개정 13.08.26. 규칙 제145호	개정 21.05.04. 학칙 제246호
개정 08.02.26. 규칙 제75호	개정 13.11.14. 규칙 제148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본교의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자원과학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보건대학원, 정보과학대학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및 법무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1. 6.13, 03. 2.27, 09.12.17)

제2조(교육목표) 이 특수대학원은 자유·정의·창조의 교시 아래 전문학술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광범·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고, 아울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① 이 특수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학생정원) ① 이 특수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1] 과 같다.(01. 2. 1, 02. 4.27, 03. 2.27, 07. 2.28, 07.11.21, 08. 2.26, 08. 10 .7,

09.11.16, 09.12.17, 10.10.20, 11.10.19, 11.12.01, 13.11.14)

② (01. 2. 1 삭제)

③ 학과의 신설, 분리, 합병, 명칭변경, 폐지는 총장이 정한다. 다만, 학과의 신설 및 분리의 경우에는 교원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99. 1. 6)

제5조(수업) 이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 또는 주간(계절수업)으로 실시한다.

## 제2장 입 학

제6조(입학시기) 이 특수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로 한다.(2000. 7.26)

제7조(입학자격) ① 이 특수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사범대학 포함) 졸업자
2. 구 대학령에 의한 대학 졸업자
3. 외국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한 자
4. 기타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개정 14.02.20)

② 이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지원 전공분야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00. 1.27, 00. 12. 1, 03. 2.27, 12.5.18, 13.05.27)

제8조(입학전형) ① 이 특수대학원 입학지원자의 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선발을 위한 고사과목, 시기, 방법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학지원서류) 입학지원자는 입학지원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 출신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0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과(전공)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00. 1. 27)

② 재입학자가 제적 전 이 특수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제3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및 수료

제11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이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반(5학기)으로 한다. 다만,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하는 자는 3년(6학기)으로 한다.(02. 4.12, 03. 2.27, 08. 2.26, 09.11.16, 09.12.17, 15.07.02)

②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03. 2.27)

③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

제12조(교과과정) 이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수업일수) 이 특수대학원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00. 7.26)

제14조(학점이수 및 인정) ① 이 특수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27학점(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33학점) 이상으로 하며, 9학점(생명자원대학원은 12학점)이내에서 본교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타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점 이상으로 한다.(02. 4.12, 03. 2.27, 08. 2.26, 09.11.16, 09.12.17, 13.05.27, 14.02.20, 15.07.02)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24학점(교직과목 4학점, 전공과목 12학점 포함. 다만,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학점은 4학점의 범위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하는 교직학점은 취득해야 할 24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7.02, 18.09.20.)

2.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 : 30학점(교직과목 4학점, 전공과목 18학점 포함. 다만,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학점은 4학점의 범위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하는 교직학점은 취득해야 할 30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5.07.02, 18.09.20.)

② 학생은 매학기 6학점(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8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소정학점 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과목으로 학기당 3학점(교육대학원은 4학점)까지 초과 취득할 수 있다.(08. 12. 17, 09. 6. 4, 10. 2. 26, 10.12.08, 12.5.18, 14.02.20, 15.07.02)

③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 각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할 전공이 다를 때에는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의 소정학점을 별도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학점인정은 각 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성적 등급이 C<sup>+</sup> 이상 일 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선수과목을 학사와 석사학위과정 과목으로 이수할 경우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위과정 학칙에 의한다.(99. 1. 6, 12. 2, 27, 단서조항 신설 12.12.21)

⑤ 소정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일 때 과정의 수료로 인정한다.(99. 1. 6, 12. 2, 27)

제14조의 2(전적학점의 인정) 학생이 입학 전에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비학위석사과정 연구과정생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 특수대학원의 현행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99. 1. 6, 99. 5.11)

제14조의 3(협동강의) ① 학생이 이 특수대학원 재학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99. 1. 6, 03. 2.27)

② 국내·외 대학원 학생이 이 특수대학원에서 학점 이수를 요청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수할 수 있다.(신설, 03. 2.27)

제15조(수료 및 졸업) 각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제16조(성적평가) 이 특수대학원의 성적은 학과시험 및 실습 또는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그 평가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료증서) 이 특수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 1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18조(등록) 학생은 매학기 초 지정한 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의한 등록(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9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 복무 기간과 임신·출산·육아 기간(2년 이내에 한함)은 임영통지서 사본, 임신·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위의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육아 휴학의 양육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에 한

한다.(00. 1.27, 13.2.26)

③ (삭제 13.2.26)

제20조(복학) 휴학자는 그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00. 7. 26, 03. 2.27)

제21조(퇴학) 퇴학을 원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해당 특수대학원장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제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 제3항의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제5장 공개강좌, 연구생, 외국인학생 및 위탁생

제23조(공개강좌) (삭제 14.12.11)

제24조(논문연구생 및 연구생) ① 이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논문연구생의 자격을 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00. 1.27)

② 이 특수대학원에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③ 연구생의 입학자격은 제7조에 의한다.

④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서식 2에 의거 이수증을, 별지서식 3에 의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연구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25조(외국인학생 및 군위탁생) ① 이 특수대학원에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및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별도 전형에 의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다.(99. 1. 6)

② 외국인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26조(위탁생) ① 국가기관에 재직자로서 그 소속 중앙관서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탁교육 할 수 있다.

② 군위탁생규정에 의거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수탁교육 할 수 있다.(99. 1. 6)

제27조(장학) 이 특수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① 이 특수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 제6장 직제와 특수대학원위원회

제29조(직제) ① 각 특수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행정실장, 학과(전공)주임교수를 둔다.(2010.12.08)

② 학과(전공)주임교수는 학생의 학위과정 이수 및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① 각 특수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13.08.2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교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된다. (13.08.26)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08.26)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특수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1조(특수대학원위원회) ① 특수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03. 2.27, 13.08.26)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특수대학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신설, 03. 2.27, 개정 03. 9. 1, 13.08.26)

③ 위원회는 각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3.08.26)

1.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2. 특수대학원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및 특수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장 학위수여

제33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1. 해당 특수대학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만,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보건대학원 및 환경대학원에서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04. 1.17, 12. 2.27, 15.07.02)
2. 해당 특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특수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현장·사례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 다만, 보건대학원은 연구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02.4.12, 03.2.27, 08.2.26, 09.11.16, 09.12.17, 15.07.02, 18.09.20.)

제34조(학위종별) 이 특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전문학위의 종별은 [별표2] 와 같다.  
(01. 2. 1, 02. 4.12, 07. 2.28, 08. 2.26, 09.12.17, 10.10.20, 11.10.19, 11.12.01, 13.11.14)

제35조(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2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99. 5.11)  
②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18학점(교육대학원은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99. 5.11, 19.08.01)

제36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및 스페인어 중 1과목을 선택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외국어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면제 기준은 본 대학교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16조 제3항의 별표 1, 2호 기준을 적용한다.(01.08.29, 08.12.17, 20.08.26)

- ③ 외국어시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④ 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으로 한다.
- 제37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2과목 이상으로 하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150점 만점에 105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8. 9. 20., 2021. 5. 4.>
- ② 종합시험 위원은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③ 합격의 유효기간은 수료 후 5년으로 한다.
- 제38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3월 또는 9월(계절제는 4월 또는 10월)에 시행한다.
- 제39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일부 또는 전과목이 불합격된 경우, 그리고 합격의 유효 기간이 경과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40조(논문제출 자격 및 시기)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논문제출 승인서를 첨부,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로 한다.
- 제41조(논문심사) ① 석사학위 논문은 본교 교원 또는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해당 특수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03. 2.27)
- ② 특수대학원장은 전항의 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은 심사에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④ 심사의 결정은 논문 공개발표회를 거쳐서 하여야 한다.
- 제42조(논문심사 판정) 제41조의 논문심사는 가·부로 판정하되,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43조(학위증서) 석사학위는 별지서식 4-1 및 별지서식 4-2에 의한 학위증서로 수여한다. 다만, 필요 시에는 별지서식 4-3에 의한 영문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02. 4.12, 15.09.14)
- 제44조(학위의 취소) ① 석사학위를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총장은 특수대학원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0.12.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위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한다.(10.12.08, 14.02.20)

## 제8장 보 칙

제45조(준용)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북대학교학칙을 준용한다.

### 부 칙(97.12.16, 학무 81412-2298)

- ①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학칙 등) 이 학칙 시행과 동시에 전북대학교경영대학원학칙(학무81412-2042, '96.12.19) ·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학칙(교양81412-95, '95.2.14) · 전북대학교농업개발대학원학칙(학무81412-425, '95.3.6) · 전북대학교산업기술대학원학칙(학무81412-2042, '96.12.19) · 전북대학교산업보건대학원학칙(학무81412-391, '95.2.28) · 전북대학교정보과학대학원학칙(학무81412-2042, '96.12.19) · 전북대학교행정대학원학칙(학무81412-391, '95.2.28) · 전북대학교환경대학원학칙(81412-2042, '96.12.19)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97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에게는 입학 당시의 각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 제3항의 제정전 학칙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자는 특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거쳐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재적자는 동대학원 윤리교육전공 재적자로 본다.

### 부 칙(99.01.06, 규칙 제3호)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99.05.11, 규칙 제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00.01.27, 규칙 제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00.07.26, 규칙 제1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0.12.01, 규칙 제1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02.01, 규칙 제1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06.13, 규칙 제20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와 학과 명칭과 학위종별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경영대학원의 변경된 전공과 학위종별은 2001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함께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01.08.29, 규칙 제22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하며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2.04.12, 규칙 제27호)

①이 학칙은 200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03.02.27, 규칙 제3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09.01, 규칙 제3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1.17, 규칙 제39호)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01.31, 규칙 제50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변경된 전공 재적자로 본다.

부 칙(06.02.14, 규칙 제58호)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변경된 전공 재적자로 본다.

부 칙(07.02.28, 규칙 제65호)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7.11.21, 규칙 제7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02.26, 규칙 제75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10.07, 규칙 제79호)

이 학칙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8.12.17, 규칙 제81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에 대한 제36조제2항의 규정 적용은 변경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09.06.04, 규칙 제8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11.16, 규칙 제93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12.17, 규칙 제95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휴학생의 경우, 복학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부 칙(10.02.26, 규칙 제9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0.20, 규칙 제103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정보과학과 3개전공(환경정보, 유전자정보, 기록관리학)재적생은 개정 前 학칙을 졸업년도 까지 적용한다.

부 칙(10.12.08, 규칙 제105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학칙 이전에 행한 업무는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1.10.19, 규칙 제112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7개 전공(가정교육, 상업교육, 조리교육, 철학교육, 한문교육, 환경교육, 간호교육)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 까지 적용한다.

부 칙(11.12.01, 규칙 제115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교육학과 교육방법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 학과 교육과정 및 공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12.02.27, 규칙 제124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05.18, 규칙 제126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 제2항 개정관련(논문연구과목)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학칙에 의하여 1학기라도 논문연구 3학점을 취득한 자는 제14조 제2항의 논문연구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12.12.21, 규칙 제135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학칙 이전에 행한 업무는 이 학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13.02.26, 규칙 제137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3.05.27, 규칙 제142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환경대학원 환경공학과 2개 전공(수질공학, 대기공학)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까지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변경되는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의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13.08.26, 규칙 제145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특수대학원간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 전공폐지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학칙 시행당시 폐지되는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한옥 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13.11.14, 규칙 제148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명자원과학대학원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생명자원과학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생물자원개발학 전공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14.02.20, 규칙 제151호)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 학칙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할 논문연구 학점(3학점)은 수료 학점에는 포함하되, 의무이수 학점에서는 제외한다.

부 칙(14.12.11, 규칙 제15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07.02, 규칙 제16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2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15.09.14, 규칙 제171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5.10.19, 규칙 제174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당시 폐지되는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과 및 보건관리학과 재적생은 개정 전 학칙을 졸업년도까지 적용한다.

부 칙(16.10.18, 규칙 제18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의 제4조제1항의 [별표 1]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제34조의 [별표 2]는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6.11.30, 규칙 제188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01.25, 규칙 제189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7.05.16, 규칙 제192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8.09.20, 규칙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대학원 학과, 전공 및 학생정원 적용례) 이 개정 학칙 제4조제1항의 [별표 1]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대학원 졸업자의 기 이수 교직학점 인정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개정학칙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교육 이수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3호의 개정학칙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19.05.17, 규칙 제216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08.01, 규칙 제220호)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9, 학칙 제22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제4조 제1항 중 [별표 1] 은 2020학년도 후기부터 적용하며, 제43조의 [별지서식 4-3] 은 2019학년도 전기 졸업자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6, 학칙 제233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조제1항의 [별표 1] 과 제34조제1항의 [별표 2]는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4, 학칙 제23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4조제1항의 별표 1과 제34조제1항의 별표 2는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칙 제246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별표 1](16.10.18, 16.11.30, 18.09.20, 20.05.19, 20.08.26, 20.12.24.)

특수대학원 학과, 전공 및 학생정원

대학원명	2021학년도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학과	전공
경영대학원	72명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산업경제학과 창업경영학과	생산·경영정보, 인사·조직, 마케팅, 재무관리 외환·국제금융, 무역경영 재무회계, 세무·관리회계 지역경제정책, 금융·보험 창업경영
교육대학원	224명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공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일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 교육, 윤리교육, 유아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 교육, 지구과학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미술교육, 스페인어교육, 청소년교육, 중어중문교육, 사서교육, 영양교육, 영재교육, 평생 교육 및 HRD, 진로진학상담, AI기반융합교육
생명자원과학대학원	14명	생명자원과학과	생명자원경제학, 지역자원개발학, 식품산업학, 원예치료학
법무대학원	30명	법학과	부동산법, 노동·복지법, 기업법 형사사법, 지방자치법, 민사법, 인권법, 국제거래통상법, 중국법
보건대학원	12명	보건학과	
산업기술대학원	45명	산업기술학과 정보기술학과	건축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자원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화학공업 전기및시스템공학,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 공학, 제어계측공학
정보과학대학원	10명	정보과학과	경영정보, 컴퓨터정보(정보처리·지능정보시스템), 문헌정보, 통계정보, 스포츠과학정보
행정대학원	70명	행정학과	행정학
		언론홍보학과	언론홍보학
		지방자치학과	지방자치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심리학과	심리학
사회학과	사회학		
환경대학원	25명	건설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한옥학과	환경공학 도시 및 부동산, 건축설계, 환경조경 한옥
수의방역대학원	10명	수의방역학과	수의방역학
계	512명		

[별표 2](16.10.18, 17.01.25, 17.05.16, 19.05.17, 20.08.26, 20.12.24.)

## 특수대학원 전문학위 종별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학위종별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교육심리	교육학석사(교육심리)
		교육과정 및 공학	교육학석사(교육과정 및 공학)
		국어교육	교육학석사(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일어교육	교육학석사(일어교육)
		일반사회교육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교육학석사(역사교육)
		지리교육	교육학석사(지리교육)
		윤리교육	교육학석사(윤리교육)
		유아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물리교육	교육학석사(물리교육)
		화학교육	교육학석사(화학교육)
		생물교육	교육학석사(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교육학석사(지구과학교육)
		수학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음악교육	교육학석사(음악교육)
		체육교육	교육학석사(체육교육)
		미술교육	교육학석사(미술교육)
		스페인어교육	교육학석사(스페인어교육)
		청소년교육	교육학석사(청소년교육)
		중어중문교육	교육학석사(중어중문교육)
		사서교육	교육학석사(사서교육)
		영양교육	교육학석사(영양교육)
평생교육 및 HRD	교육학석사(평생교육)		
영재교육	교육학석사(영재교육)		
진로진학상담	교육학석사(진로진학상담)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생산·경영정보	경영학석사(생산·경영정보)
		인사·조직	경영학석사(인사·조직)
		마케팅	경영학석사(마케팅)
		재무관리	경영학석사(재무관리)
		창업경영학	경영학석사(창업)
	회계학과	재무회계	경영학석사(재무회계)
		세무·관리회계	경영학석사(세무·관리회계)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학위종별
	무역학과	외환·국제금융	무역학석사(외환·국제금융)
		무역경영	무역학석사(무역경영)
	산업경제학과	금융·보험	경제학석사(금융·보험)
		지역경제정책	경제학석사(지역경제정책)
생명자원과학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생명자원경제학	경제학석사(생명자원경제학)
		지역자원개발학	농학석사(지역자원개발학)
		식품산업학	농학석사(식품산업학)
		원에치료학	농학석사(원에치료학)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보건학석사(보건학)
정보과학대학원	정보과학과	경영정보	정보과학석사(경영정보학)
		컴퓨터정보	정보과학석사(컴퓨터정보학)
		문헌정보	문헌정보학석사(문헌정보)
		통계정보	정보과학석사(통계정보학)
		스포츠과학정보	정보과학석사(스포츠과학정보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행정학석사(행정학)
	언론홍보학과	언론홍보학	언론홍보학석사(언론홍보학)
	지방자치학과	지방자치학	정치학석사(지방자치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학)
	심리학과	심리학	심리학석사(심리학)
	사회학과	사회학	사회학석사(사회학)
산업기술대학원	산업기술학과	건축공학	공학석사(건축공학)
		금속공학	공학석사(금속공학)
		기계공학	공학석사(기계공학)
		산업공학	공학석사(산업공학)
		섬유공학	공학석사(섬유공학)
		자원공학	공학석사(자원공학)
		재료공학	공학석사(재료공학)
		토목공학	공학석사(토목공학)
	화학공업	공학석사(화학공업)	
	정보기술학과	전기및시스템공학	공학석사(전기및시스템공학)
		전자공학	공학석사(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공학석사(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공학석사(컴퓨터공학)
제어계측공학		공학석사(제어계측공학)	
환경대학원	건설환경공학과		공학석사(건설환경공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	공학석사(환경공학)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부동산	공학석사(도시 및 부동산)
		건축설계	공학석사(건축설계)

대학원명	학과명	전공명	학위종별
		환경조경	공학석사(환경조경)
	한옥학과	한옥	공학석사(한옥)
법무대학원	법학과	부동산법	법학석사(부동산법)
		민사법	법학석사(민사법)
		노동·복지법	법학석사(노동·복지법)
		기업법	법학석사(기업법)
		형사사법	법학석사(형사사법)
		지방자치법	법학석사(지방자치법)
		인권법	법학석사(인권법)
		국제거래통상법	법학석사(국제거래통상법)
		중국법	법학석사(중국법)
수의방역대학원	수의방역학과	수의방역학	수의학석사(수의방역학)

[별지서식 1]

제 호	<b>수 료 증 서</b>				
	성 명				
	서 기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전공)에서 년 월간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전북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전북대학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별지서식 2]

<b>이 수 증</b>					
	성 명				
	서 기	년	월	일	
위 사람은 연구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본교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연구생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전 북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직 인

[별지서식 3]

<b>대학원연구생 연구실적 증명서</b>					
	성 명				
	서 기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에서 서기 년 월 일부터 서기 년 월 일까지 을 연구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전 북 대 학 교	대 학 원 장				직 인

## [별지서식 4-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석사( )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전북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석사( )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전북대○○○○석○○○				

## [별지서식 4-2]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	일생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전공)	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현장·사례연구보고서에 합격하여	석사( )	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전북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위 인정에 의하여	석사( )	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
학위번호 : 전북대○○○○석○○○				

[별지서식 4-3](신설 15.09.14, 20.05.19)

M-일련번호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nd Graduate School Council  
hereby confers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Master of 영문 학위명

in recognition of the completion of advanced study in the

영문 전공명

with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the Graduate School,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 ○○○ day of ○○○, two thousand ○○○.

총장 서명

Presid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소속 대학원장 서명

Dean, 특수대학원 영문명

Diploma No. JBNUY(M) 학위번호

[별지서식 5]

## 이 수 증 서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는 본교 ○○대학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전북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성명)      직인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위)      (성명)      직인